

제307회 임시회  
2012. 3. 12.(월)

# 심 사 보 고 서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1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3. 12.(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2년 2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3월 6일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경용)

가. 제안이유

- 우리도 소유의 충주의료원이 문화동에서 안림동으로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가 2012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의료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을 활용하고자
- 도 본청 포함,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수요를 파악 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규모가 커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워
- BTL방식으로 추진 중인 충주의료원 신축 사업비의 소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BTL 상환액(20년) : 1,154억원 정도, 연 57.7억원(국비50%, 도비50%)

## 나. 주요내용

### □ 재산의 처분

####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매각》

- 위 치 :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일원
- 재산규모 : 토지 15,347㎡(8필지), 건물 10,680㎡(7동)
- 매각시기 : 2012. 3월(충주의료원 이전 후) ~
- 재산가액 : 8,435백만원 정도(예비감정평가액)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연병호)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충주의료원이 문화동에서 안림동으로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가 201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충주의료원 신축 사업비의 소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신축중인 충주의료원은 BTL방식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BTL 상환액은 20년간 1,154억원 정도로 연간 5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타용도로의 활용이 어려운 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BTL 상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284 호
----------	---------

제출연월일 : 2012년 2월 2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우리도 소유의 충주의료원이 문화동에서 안림동으로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가 2012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의료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을 활용하고자
- 도 본청 포함,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수요를 파악 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규모가 커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워
- BTL방식으로 추진 중인 충주의료원 신축 사업비의 소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BTL 상환액(20년) : 1,154억원 정도, 연 57.7억원(국비50%, 도비50%)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처분

####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매각》

- 위 치 :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일원
- 재산규모 : 토지 15,347㎡(8필지), 건물 10,680㎡(7동)
- 매각시기 : 2012. 3월(충주의료원 이전 후) ~
- 재산가액 : 8,435백만원 정도(예비감정평가액)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6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충주의료원 재산 세부내역

□ 부 지 : 15,347m<sup>2</sup> / 8필지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계	8 필지		15,347.00	6,180,225	
1	충주시 문화동 1654	도로	721.00	97,335	
2	충주시 문화동 1655	대지	13,197.00	5,542,740	
3	충주시 문화동 1656	도로	231.00	31,185	
4	충주시 문화동 1657	도로	32.00	13,440	
5	충주시 문화동 1675-1	도로	90.00	12,150	
6	충주시 문화동 1676	도로	93.00	12,555	
7	충주시 문화동 1677	대지	17.00	7,140	
8	충주시 문화동 1704	대지	966.00	463,680	

□ 건 물 : 10,680.68m<sup>2</sup> / 7동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연면적	추정가격	비 고
계	7 필지		10,680.68	2,255,262	
1	충주시 문화동 1655	대지	96.10	20,181	
2	충주시 문화동 1655	대지	107.65	26,913	
3	충주시 문화동 1655	대지	619.26	123,852	
4	충주시 문화동 1655	대지	23.10	8,085	
5	충주시 문화동 1655	대지	115.87	40,554	
6	충주시 문화동 1655	대지	8,873.64	1,858,214	
7	충주시 문화동 1704	대지	845.06	177,463	

# 관계 법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b>제29조(계약의 방법)</b>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6조(계약의 방법)</b>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p> <p>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lt;개정 2011. 10. 21&gt;</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